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이 필요한 학생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에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병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과 같이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 재학 기간 중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입학할 학교를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안 제69조제2항제3호 및 제87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0. ~ 8.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제87조제2항 중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장애인”을 “사람”으로 한다.

1.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 법) ① (생 략) ② 교육장은 제68조에도 불구하 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 학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 정) ① (생 략)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 여 선발된 <u>지체장애인 중 원활 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u>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 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희귀질환관리법</u> 」 제2조제 1호에 따른 <u>희귀질환</u> , 그 밖에 <u>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 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 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u>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 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u> ----- ----- ----- -----.

<u><신 설></u> <u><신 설></u>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u>지체장애</u>인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1. <u>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u> 2.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희귀질환</u>, 그 밖에 <u>암, 1형 당뇨병 및 중증의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u> ③----- ----- <u>사람</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40